|  |  |
| --- | --- |
| **일본** |  |
|  |
|  | **「지구온난화완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소개** |

**1. 개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연합은 1997년 12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교토의정서”라 함)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온실 가스가 지구의 기후와 관련된 것으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치를 규정하는 등 각 국가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약으로, 미 국,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회원국 등 38개국을 의무이행 대상 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의 신축적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권 및 그에 관한 거래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이행 대상국은 온실가스 배출 을 감축하기 위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완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 律)」을 1998년(헤이세이10년) 제정하였고, 2013년 5월 31일 최

종 개정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위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목적 및 정의**

「지구온난화완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은 지구온난화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후체계에 대해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 류공통의 과제이고 모든 사람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과 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구온난화대책 에 관한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책정하고 사회경제활동, 그 밖 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 치를 강구하는 등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에 기여함과 동 시에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에서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는 온실 가스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 체에 지표, 대기 및 해수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을 뜻하며, “**지구온난화대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이하,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이

라 함), 기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도모하 기 위한 시책을 말한다.

“**온실가스**”는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  |  |
| --- | --- |
| 1 | 이산화탄소 |
| 2 | 메탄 |
| 3 | 아산화질소 |
| 4 | 수소불화탄소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1) |
| 5 | 과불화탄소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2) |
| 6 | 육불화황 |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 공급 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연원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란 온실가스가 있는 물질을 정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당해물질의 배출량에 당해물질의 지구온난화계수(온실가스인 물질마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이산화탄소와 관계되는 해당 정도에 대한 비율을 표시 하는 수치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식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정한 계수를 말한다)를 곱해 얻은 양의 합계를 말한다.

“**산정할당량**”이란 다음의 수량으로 이산화탄소 1톤을 표시 하는 단위에 의해 표기된 것을 말한다.

|  |  |
| --- | --- |
| 1 | 교토의정서 제3조7에서 규정하는 할당량 |
| 2 | 교토의정서 제3조3에서 규정하는 순변화에 상당하는 양의 할당량 |
| 3 | 교토의정서 제6조1에서 규정하는 배출감소단위 |
| 4 | 교토의정서 제12조3(b)에서 규정하는 인정된 배출감소량 |
| 5 | 이 외에 교토의정서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한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 동조1의 산정된 할당량으로서 인정되는 것의 수량 |

**3.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1)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변화의 상황 및 그와 연관된 기후변화 내지 생태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측 및 감시함과 동시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구온난화대책을 수립 하고 실시한다. (2) 또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과 관련 있는 시책에 있어 해당 시책의 목적 달성과 조화를 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그리고 자신의 사 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흡수작용의 보전·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자, 국민 또는 이러한 자가 조직하는 민간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에 관해 행하는 활동의 촉진을 위해 기술적 조언 및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한다. (4)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 규 정하는 배출량거래의 참가 및 그 밖의 교토의정서 제3조의 규 정에 기초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지구온난화 및 그 영향의 예측에 관한 조사,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위한 기술적 조사 및 기타 지구온난화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위 한 기술적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 다. (6) 그리고 일본의 경제사회가 국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로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에 축적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살려 관측 및 감시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연계를 확보하고, 조사 및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 해 국제협력, 기타 지구온난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 또는 민 간단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 한 활동의 촉진을 위해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노력을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에 관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 제4조제1(a)항에서 규정하는 목록 및 교토의정서 제 7조1에서 규정하는 연차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매년 일본에서의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을 산정하고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한다.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 억제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자신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및 흡수작용의 보전·강 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구역의 사업자 또는 주 민이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에 관해 행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위 시책에 관한 정보 제공,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한다.

사업자는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위한 조치(다른 자의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에 기여하기 위 한 조치를 포함함)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위한 시 책에 협력해야 한다.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위한 조치 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온 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4. 할당량 계좌부 등**

교토의정서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3)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완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 서는 온실가스 할당량에 관한 계좌부를 규정하고 산정할당량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량 계좌부의 작성** :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은 교 토의정서 제4조에 근거하여 할당량의 계산방법에 관한 국제적 결정에 따라 할당량 계좌부를 작성하고 산정할당량을 취득, 보 유 및 이전(이하 “산정할당량의 관리”라고 함)을 이행하기 위 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함)을 개설한다. 할당량 계좌부는 그 전부를 자기 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 사항을 확 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로 만든다.

**산정할당량의 귀속** : 산정할당량의 귀속은 할당량 계좌부의 기록에 의해 정해진다.

**할당량 계좌부의 기록사항** : 할당량 계좌부는 국가의 관리계 좌,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하 “내국법 인”이라 함)의 관리계좌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의 관리계좌는 해당 관리계좌의 명의인(해당 관리계좌의 개설을 받은 자를 말 함, “계좌명의인”이라 함)마다 구분한다. 관리계좌에는 (1) 계 좌명의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본점 등의 주소지 및 기타 환 경성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사항, (2) 보유하는 산정할당량

의 종별마다의 수량 및 식별번호(산정할당량을 1단위마다 식별 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의 체약국 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 합협약의 사무국에 의해 부착된 문서 및 숫자를 말함), (3) 산 정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재산일 때 그 요지, (4) 그 밖의 타 정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한다.

**관리계좌의 개설** : 산정할당량을 관리하는 내국법인은 환경 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에게 관리계좌의 개설을 받아야 한 다. 관리계좌는 일 내국법인에게 하나씩 개설된다. 관리계좌의 개설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본점 등 의 소재지, 기타 환경성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기타 환경성령·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 업성장관은 관리계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또 는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 지체 없이 관리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관리계좌를 개설하 면 지체 없이 해당 관리계좌의 산정할당량의 관리를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경의 신고** : 계좌명의인은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본점 등 의 소재지, 기타 환경성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환경성장관 및 경제

산업성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있는 경우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변경한다. 관리계 좌의 개설에 관한 내용이 사항의 기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 된다.

**대체 절차** : (1) 산정할당량의 취득 및 이전(이하 “대체”라 함)은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이 해당 할당량 계좌부에 해당 산정할당량에 대한 감소 또는 증가의 기록하는 바에 따라 행해진다. (2) 산정할당량 대체의 신청은 대체에 의한 그 관리 계좌에 감소의 기록이 된 계좌명의인이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 업성장관에게 한다. (3) 산정할당량의 대체를 신청하는 계좌명 의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 --- | --- |
| 1 | 해당 대체에 있어 감소 또는 증가의 기록이 되어야 할 산정할당량의 종별 수량 및 식별번호 |
| 2 | 해당 대체에 의해 증가의 기록되어야 할 관리계좌(4.의 경우는 제외 함. 이하 “대체선계좌”라 함) |
| 3 | 대체선계좌가 국가의 관리계좌인 경우 해당 대체목적이 다음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지 구별 |
| - 취소(할당량의 산정방법에 관한 국제적 결정에 기초하여 산정할당 |
| 량을 교토의정서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한 약속의 이행에 이용할 |
|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함) |
| - 상환(할당량의 산정방법에 관한 국제적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가 |
| 산정할당량을 교토의정서 제3조의 규정에 기초한 약속의 이행에 |
| 사용하는 것을 말함) |
| - 의무를 이행할 목적 |

|  |  |
| --- | --- |
|  | - 앞 3가지 이외의 목적 |
| 4 | 교토의정서의 다른 체약국에 존재하는 계좌로부터 산정할당량의 대체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체약국명 및 해당 대체로 인한 증가 가 기록되어야 할 계좌 |

(4) 신청이 있는 경우, 위4의 경우 및 그 밖에 환경성령·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 --- | --- |
| 1 | 신청인의 관리계좌에 산정할당량의 감소를 기록함 |
| 2 | 대체선계좌에 | 산정할당량의 | 증가를 | 기록함 |

(5)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경성령·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할당량의 산정방법에 관한 국제적 결정에 기초하여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은 해당 다른 체약국 및 사무국에게 해당 대체에 관한 통지를 발함과 동시에 해당 다른 체약국 및 사무국으로부터 해당 대체의 완료 의 통지를 받은 후에 해당 신청인의 관리계좌에 산정할당량의 감소의 기록을 한다. (6) 다른 체약국 또는 사무국으로부터 할 당량 계좌부의 관리계좌로부터 산정할당량의 대체를 하는 취지 의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할당량 산정방법에 관한 국제적 결 정에 기초하여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은 해당 관리계좌 의 해당 산정할당량에 대한 증가의 기록을 한다. (7) 산정할당 량의 대체는 앞의 내용에 의한 것 외에 환경성령·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에게 관 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행할 수 있다.

**식목사업에 관해 인증된 배출감소량과 관련된 조치** : 환경성 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은 식림산업에 관한 인증된 배출감소량 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3(b)에 규정된 인증된 배출감소량 중 신규식림사업(新規植林事業) 또는 재식림사업(再植林事業)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에 관한 국제적 결정에 기초하 여 사무국으로부터 특정인증배출감소량(교토의정서 제12조3(b) 에 규정한 인증된 배출감소량 중 식림사업과 관련되어 인증된 배출감소량에 관한 국제적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 환경성령·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에 관한 삼림의 멸실 등에 수 반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환경성령·경 제산업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통지에 관한 특정인증배 출감소량을 보유하는 계좌명의인에게 기한을 정해 해당 통지에 관한 특정인증배출감소량 또는 해당 통지에 관한 특정인증배출 감소량과 동량의 산정할당량(환경성령·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함)의 국가 관리계좌로부터의 이전을 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좌명의인은 이전의 기한까지 해당 통지에 관한 특정인증배출감소량 또는 해당 통 지에 관한 특정인증배출감소량과 동량의 산정할당량을 국가의 관리계좌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정할당량 양도의 효력발생요건** : 산정할당량의 양도는 대 체와 같이 양수인이 그 관리계좌에 해당 양도에 관한 산정할당 량의 증가의 기록을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체약국에 존재하는 계좌로부터 산정할당량을 대체받은 경 우 해당 기타 체약국 및 사무국으로부터 해당대체의 완료를 통 지 받으면 증가의 기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질권 설정의 금지** : 산정할당량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 다.

**산정할당량 신탁의 대항요건** : 산정할당량에 대한 신탁은 수 탁자가 당해 신탁의 수탁자가 그 관리계좌에 기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유의 추정** : 국가 또는 계좌명의인은 그 관리계좌의 기록 된 산정할당량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취득** : 대체에 의한 그 관리계좌에 산정할당량 증가의 기록을 받은 국가 또는 계좌명의인은 해당 산정할당량을 취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할당량 계좌부에 기재된 사항의 증명 청구** : 계좌명의인은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에 대해 할당량 계좌부의 자기 관리계좌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 구할 수 있다.

**권고 및 명령** : 환경성장관 및 경제산업성장관은 정당한 이 유 없이 국가의 관리계좌로 이전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기한을 정해 그 이전을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권고를 받은 계좌명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기한을 정해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

法律施行令)」 제1조

|  |  |
| --- | --- |
| 1 | 트리 플루오르 메탄 (일명 ＨＦＣ―23) |
| 2 | 디 플루오르 메탄 (일명 ＨＦＣ―32) |
| 3 | 플루오르 메탄 (일명 ＨＦＣ―41) |
| 4 | 1·1·1·2·2 - 펜타 플루오르 에탄 (일명 ＨＦＣ―125) |
| 5 | 1·1·2·2 - 테트라 플루오르 에탄 (일명 ＨＦＣ―134) |
| 6 | 1·1·1·2 - 테트라 플루오르 에탄 (일명 ＨＦＣ―134ａ) |
| 7 | 1·1·2 - 트리 플루오르 에탄 (일명 ＨＦＣ―143) |
| 8 | 1·1·1 - 트리 플루오르 에탄 (일명 ＨＦＣ―143ａ) |
| 9 | 1·1 - 디 플루오르 에탄 (일명 ＨＦＣ―152ａ) |
| 10 | 1·1·1·2·3·3·3 - 헤프타 플루오르 프로판 (일명 ＨＦＣ―227ｅａ) |

|  |  |
| --- | --- |
| 11 | 1·1·1·3·3·3 - 헤키 플루오르 프로판 (일명 ＨＦＣ―236ｆａ) |
| 12 | 1·1·2·2·3 - 펜타 플루오르 프로판 (일명 ＨＦＣ―245ｃａ) |
| 13 | 1·1·1·4·4·5·5·5 - 데카 플루오르 펜탄 (일명 ＨＦＣ―43―10ｍｅｅ) |

2)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
| --- | --- |
| 1 | 파 플루오르 메탄 (일명 ＰＦＣ―14) |
| 2 | 파 플루오르 에탄 (일명 ＰＦＣ―116) |
| 3 | 파 플루오르 프로판 (일명 ＰＦＣ―218) |
| 4 | 파 플루오르 부탄 (일명 ＰＦＣ―31―10) |
| 5 | 파 플루오르 씨클로 부탄 (일명 ＰＦＣ―ｃ318) |
| 6 | 파 플루오르 펜탄 (일명 ＰＦＣ―41―12) |
| 7 | 파 플루오르 헥산 (일명 ＰＦＣ―51―14) |

3) 각국에 따라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보다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그 초과분만큼 탄소배출권을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정 해진 배출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에는 탄소배출거래소에서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참고 자료>**

-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규약의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지구온난화완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